

바오로 회칙

1. ‘ 바오로 6세 회칙’ 의 구조

1978년 6월 24일 바오로 6세의 ?Seraphicus Patriarcha? 칙서가 반포됨으로써 1965년 회칙의 계획 안(案)이 나온지 13년만에 회칙의 모든 쇄신 과정은 끝을 맺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인준한 ‘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의 구성을 살펴보면, 머리말과 함께 전체 3개 장에 26개 조로 되어 있다.

머리말은 ‘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 인 ‘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I’ 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 권고의 주 내용은 “ 회개하는 이들” 과 “ 회개하지 않는 이들” 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1장(1~3조)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정체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1조는 교회, 프란치스칸 가족, 3회의 역사 속에서 재속 프란치스코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령의 부르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교회의 많은 영적 가족 중의 하나인 프란치스칸 가족이 어떻게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일치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방식은 공동 카리스마를 지니면서도 다양성이 있으며, 독특한 특색을 지닌 프란치스칸 가족에게 교회의 생활과 선교 안에서 평신도와 수도자와 성직자들이 함께 거룩해지기를 노력하고, 연대하기를 바란다. 2조는 프란치스코의 전체 가족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며, 특별히 ‘ 재속성’ 을 지적해 준다. 모든 사실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공적인 회(會)로 드러내준다는 사실이다. 과거 회칙의 연속성과 오늘날 시대의 영향과 교회에 의한 인준을 3조에서 다루고 있다. 현 회칙은 약 800년에 걸쳐 나온 회칙 중에서 4번째 회칙이다. 이 회칙은 오늘날에 적합하고 현대에 맞는 ‘ 프란치스칸 복음적 생활의 변치 않는 원리’ 를 보여준다. 이런 운동을 끊임없이 복음에서부터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회칙 해석의 권한과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회칙 제2장(4~19조)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 생활 양식’ 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4~6조) 부분은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의 ‘ 복음 생활에 대한 의미’ 를 보여준다. 두 번째(7~8조) 부분은 이런 복음 생활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先조건으로써 ‘ 회개와 예배’ 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9~19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10~14조), 무엇을 해야 하는지(15~19조) 알려준다. 제2장은 성서와 2차 바티칸 공의회와 빛 안에서 복음화를 위한 계획을 보여준다. 먼저 어떻게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방법을 따라 복음화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음화 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장(20~26조)은 ‘ 형제회’ 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2장에서 서술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복음 생활은 각 단위 지역 ‘ 형제회’ 라 불리는 조직된 공동체의 틀 안에서 전개되고 유지된다. 3장은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20조에서는 각 단위의 형제회를 다양한 등급으로 나누고, 각 형제회 자신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21조는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생활과 지도를 받고 있으며,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특별한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22조는 형제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의 인준으로 설립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23조는 형제회의 입회와 서약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평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4조는 형제회의 월례회 모임과 함께 그 안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25조는 형제회의 운영에 대한 회비 납부에 대하여, 26조는 1회와 3회의 유대관계를 언급하면서 회원들의 영적 성장 위해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서술한다. ‘ 바오로 6세 회칙’ 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말 :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

제1장 재속 프란치스코회

1. 모든 프란치스칸들의 성소(聖召) : 교회 안에서 프란치스칸의 카리스마를 실현하도록 지향한다.

2. 재속 프란치스코의 성소(聖召) : 재속 신분으로 복음적 생활을 추구한다.
3. 회칙의 해석은 교황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장 생활 양식

4.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 복음을 실행한다.
5.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힘써야 한다.
6. 교회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7. 회개를 통해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8. 교회의 기도생활 특히 성체성사에 참여해야 한다.
9.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야 한다.
10. 각자의 삶의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11. 단순한 생활을 하며, 만물의 재화를 나누고, 소유욕과 지배욕을 피해야 한다.
12. 마음의 깨끗함을 지녀야 한다.
13.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
14.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해야 한다.
15. 특히 ‘ 사회생활 분야’ 에서 정의를 촉진해야 한다.
16. 인류를 위한 속죄로써 노동을 추구해야 한다.
17. 가정을 하느님 사랑의 표지로 만들어야 한다.
18. 모든 창조물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19. 일치와 화합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3장 형제회 생활

20.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여러 등급의 형제회로 구분된다.
21. 회장과 평의회원이 형제회를 지도한다.
22. 단위 형제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23. 입적은 예비기, 양성기, 회칙 서약으로 이루어진다.
24. 평의회는 형제회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한다.
25. 회원들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26. 각 형제회는 영적보조와 법적 시찰, 그리고 형제회의 시찰을 요청해야 한다.

2. ‘ 바오로 6세 회칙’ 분석

새로운 회칙의 쇄신 과정을 통해, 어떤 정신이 회칙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회칙의 개정판들이 새로이 나올 때마다 강조된 것은 ‘ 재속인으로서, 보다 프란치스코적으로, 보다 복음적인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3가지 요소는 새로운 회칙의 쇄신 과정에서 강조해 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었다.

1) 옛 회칙의 폐지와 쇄신

‘ 바오로 회칙’ (1978)은 ‘ 우골리노 회칙’ (1221), ‘ 니콜라오 회칙’ (1289), ‘ 레오 회칙’ (1883) 이후 네 번째 회칙이다. ‘ 바오로 회칙’ 이전의 모든 회칙(옛 회칙)은 ?Seraphicus Patriarcha?(세라핌 천사적 사부) 칙서로 모두 폐지되었다. “ 본 서장과 사도적 권한으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전(前) 3회 회칙을 폐지합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네 가족 총장들의 서한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면서 새 회칙이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 레오 13세가 인가하신 종래 회칙은 폐지되고 새 회칙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옛 회칙은 더 이상 실천 규범으로써의 생활 양식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 옛 회칙의 폐지’ 라 할 때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에서 오는 ‘ 원칙’ 이나 ‘ 정신’ 이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유래된 원칙이나 정신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리 드러나기에 ‘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속 프란치스코회’ 는 ‘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 나 ‘ 프란치스코 3회’ , ‘ 재속 프란치스코 3회’ 의 직접적이며, 법적인 계승자이다. 그래서

‘ 바오로 6세 회칙’ 은 옛 회칙과 동일한 생활 양식이다.

칼 쉐이퍼(Carl Schafer OFM)는 3회원들에게 “ ‘ 프란치스코 3회원’ 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 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의미 심장한 말을 하였다. 이 말은 1978년 새로운 회칙이 반포되면서 이전의 ‘ 레오 13세 회칙’ (1883)이 폐지되었기에 현대의 모든 회원들은 ‘ 바오로 6세 회칙’ 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레오 회칙’ 과 ‘ 바오로 회칙’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보자.

① 단일 지역(Local) 구조에서 국제(International) 구조로

‘ 레오 13세 회칙’ 은 3회를 ‘ 하나의 통일된 회’ 로 보기보다는 각 지역에 독립되어 있는 ‘ 지역단위의 형제회’ 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레오 13세 교황이 ‘ 지역 단위의 형제회’ 모두에게 각각 회칙을 준 것으로 인식하였기에 같은 1회나 정규 3회로부터 지도를 받더라도 ‘ 지역 단위 형제회’ 들은 서로 관련을 맺지 않았다. 1회나 정규 3회의 경우에 자신들의 지도를 받는 3회를 ‘ 카푸친 프란치스코 3회’, ‘ 꼰벤투알 프란치스코 3회’, ‘ 읍세르반테스 3회’ 라 칭하였다. 사실 3회는 1회와 정규3회 곧 4가족 수도회들 가운데 하나의 지도를 받았다. 3회가 지역 단위 상태에서 발전하였을 때에도 한정된 수도회 관구 안에서만 3회 형제회들과 연대를 가지는 ‘ 관구 차원의 구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기에 각지의 형제회 3회원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없었다.

‘ 바오로 6세 회칙’ 에서는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 온 세계 안의 모든 가톨릭 형제회들의 유기적인 단일조직체”(2조)로 보며, “ 각 단위, 지구, 국가 및 국제 등 규모에 따라 여러 등급의 형제회로 구분하고, … 각 등급 형제회들은 서로 일치하며, …결합되어 있다.” (20조)고 가르친다. 또한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1회나 정규 3회의 조직에서 떠나 독립된 고유의 한 단체로 보고 있다.(2조)

이것은 곧 전 세계의 모든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같은 ‘ 하나의 회’ 임을 뜻한다. 한국 형제회이건 이태리의 형제회이거나 또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형제회들 모두 하나의 ‘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 이며, 이들은 같은 회칙에 따라 서로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또 꼰벤투알 프란치스코회의 영적 지도를 받든지, 작은 형제회(OFM.)의 영적 지도를 받든지 상관없이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 하나’ 이다.

② 권한이 성직자에게서 평신도에게로

‘ 니콜라오 4세 회칙’ (1289)에 3회의 시찰자는 작은 형제회원으로 규정되었고, 또 이 때 공식적으로 시찰자는 평형제가 아닌 수도 사제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졌다. ‘ 레오 13세 회칙’ (1883)에서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은 관리자들(Custodes), 감독자들(Gurdians), 시찰자들(Visitors)로 등장한다. 시찰자들은 회원들이 회칙을 잘 지키는지 성의 있게 조사한다. 시찰자는 프란치스코 1회나 정규 3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관구장이나 지역 원장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평신도는 시찰자의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성직자인 시찰자는 형제회의 감독을 맡았고 모든 임원과 회원을 모임에 소집했다. 시찰자와 네 가족 수도회의 원장들은 회원들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거나 관면을 줄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레오 13세 회칙’ 에는 영적 지도자(Spiritual Director)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회원들은 자기들의 ‘ 서약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할 뿐이다. 그러나 수도 사제는 지역 단위 형제회의 영적 지도자이었고 가끔 모임에서 형제회 회장이 있어도 의장으로 임했다. 또 재속 임원이 하기로 되어 있는 회계와 서기의 일도 하였다. 또 새로운 회원의 입회를 허가했고, 회원의 서약을 당시 전례를 따라 받아들였다. ‘ 바오로 6세 회칙’ 에 의하면, 옛 회칙에서 수도회 사제가 지닌 많은 권한들이 ‘ 독자적인 위치’ 를 지닌 재속 프란치스코회 평신도인 회장에게로 넘어왔다. 형제회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평의회원들과 회장의 지도를 받아 활기를 띄게 된다.(21조) 그리고 ‘ 레오 13세 회칙’ (1883)에서 사제가 입회자들을 받아들였다면, 새 회칙에서는 평의회가 새 형제들의 입회 여부를 결정하고,(23조) 단위 형제회의 회장이 새 회원의 입회를 허가하고, 서약으로 받아들인다. 탈회 혹은 결정적인 제명의 경우에 형제회의 평의회가 결정한다.(23조) 그리고 평의회가 공동체의 정기적인 집회와 만남을 갖도록 해야한다.(24조) 네 가족 수도회는 회장의 ‘ 요청에 따라’ 영적 도움과 사목 방문(시찰)을 한다.(26조)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 가족의 불가분한 일원으로서 세상 안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살도록 불리움을 받았으므로 제1회 및 정규 3회와 특별하고도 밀착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영적, 사목적 지도는 제1회와 정규 3회에게 맡겨졌다. 이것은 재속 프란치스코회 즉 3회의 고유한 성격이다.

③ 수도회(religious) 용어에서 세속(secular) 용어로

‘ 레오 13세 회칙’ (1883)은 ‘ 프란치스코 재속 3회’ (The Third Order Secular of St. Francis)라는 용어로 주로 ‘ 3회’ 라고 불렀다. 그리고 수련기(Novitiate), 서약(Profession), 봉송(recit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1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련 과정을 마친 후 3회의 회칙에 대해 서약한다.” 또 회원들은 매일 성무일도를 ‘ 봉송’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또 그 당시에 사용되던 용어들을 살펴보면, 입회(Reception), 청원자(postulants), 수련장(novice master, novice mistress), 그리고 관구장(Ministers Provincial)과 3회 관구(T.O. Provinces)등 여러 용어들이 수도원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래서 실생활 역시 재속인으로서 보다는 수도자적인 행동을 강조하게 되었다. ‘ 실생활은 언어를 따라간다.’ 또 3회원들은 서약 때 수도명(religious name)을 가졌고, ‘ 레오 13세 회칙’ 에서 작은 스카폴라와 띠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복(a religious habit)을 계속해서 입었다. 그리고 남녀를 별개의 형제회로 구분하였고 한 형제회 안에 남녀가 있게 되면 모임에서 양쪽에 갈라 앉혔다.

‘ 바오로 6세 회칙’ 은 수도생활의 용어를 세속 사람에게 적합한 용어로 바꾸었다. ‘ 바오로 6세 회칙’ 은 명칭을 ‘ 재속 프란치스코회’ (Secular Franciscan Order)로 바꾸었고, ‘ 입회’ , ‘ 수련’ 등의 용어를 ‘ 예비기’ (a time of initiation)와 ‘ 양성기’ (a period of formation)(23조)로 바뀌었다. 또 1978년 이후에는 과거 ‘ 수련장’ 을 양성의 1차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 양성 담당자’ (the person responsible for formation)로 부르고 있다. 또 수도복이나 스카폴라와 띠를 착용하기보다는 일상 복장에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임을 드러내주는 ‘ 독자적인 표지’ (23조)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독자적 표지는 제반 규정으로 정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1990년 회헌을 보면 “ 재속 형제회 회원임의 특별한 표지(타우 십자가나 다른 프란치스코의 상징들)로 정할 것” 이라고 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 형제회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④ ‘ 의존’ 의 관계에서 ‘ 공동 책임’ 으로

‘ 바오로 6세 회칙’ 이전의 지도 신부는 ‘ 영적 지도자’ 라고 불리웠고, 3회원들의 구원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지도 신부나 3회원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래서 ‘ 바오로 6세 회칙’ 의 이전 지도 신부와 3회원들과의 관계를 ‘ 권위와 의존의 관계’ 로 규정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 하느님 백성’ 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녀로서, 같은 품위를 가지며 은총도 같고 완덕에로의 성소도 같으며, 구원도 희망도 사람도 하나임을 강조하고 사제나 수도자, 평신도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불리움 받았기에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야 하는 공동 책임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 바오로 6세 회칙’ 에서 사제는 더 이상 ‘ 지도자’ 나 ‘ 조정자’ 가 아닌 ‘ 보조자’ (assistant)임을 밝히고 있다.(26조) 사제(수도자)와 3회원간의 공동 책임(26조) 혹은 상호 의존은 재정적인 일을 비롯한 모든 형제회 일을 할 때 3회원들이 사제의 권위에 의존하는 상황을 대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25조) 하느님의 백성인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명에 공동 책임을 지녀야 한다. 또한 여러 등급의 형제회도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다.(21조) 각 단위 형제회가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상급 형제회가 책임을 지고 도와 주어야 하며, 또 상급 형제회의 직무를 소홀히 할 때 단위 형제회는 형제적 방문을 요청함으로써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책임을 진다.(26조)

2) 제2차 바티칸의 공의회 정신

① 재속인

옛 회칙에서는 3회원의 신원에 대해 말할 때 ‘ 세속’ (secular)이라든지 또는 ‘ 세상’ (mundus)을 지칭하는 단어들 사용된 적이 없다. ‘ 우골리노 회칙’ (1221)에 따라 살던

당시의 13세기 3회원의 직업을 보면, 사본 필기자(寫本 筆記者), 공증인(公證人), 빵 굽는 사람, 구두 수선공, 마구(馬具) 제조인, 모피 상인, 대장장이, 재봉사, 반지 세공인, 도공(陶工), 이발사와 몇몇 왕족과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교회의 직무에 봉사하기보다는 가정과 세속의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원을 규정할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엄격한 규정의 의복이나 또 군역과 공직 생활로부터의 면제, 무기 휴대의 금지, 3회원들 사이의 소송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시(市) 법정에서가 아니라 형제회의 봉사자나 주교에게 위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평범한 평신도의 신분을 벗어나서, 거의 성직자와 수도자의 신분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니폴라오 4세 회칙’ (1289) 역시 ‘우골리노 회칙’ 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점에서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의복의 형태가 변화되지 않았고, ‘레오 13세 회칙’ (1883)은 많은 이들이 3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의복의 규정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으나 역시 이전의 회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레오 13세 회칙’ 에 의해 3회원들은 “작은 성의(scapular)와 띠를 착용” 해야 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회 회원으로써의 자격과 권리가 박탈된다” 고 까지 하였다. 이렇게 볼 때 3회원들은 다른 단체나 일반 평신도들과도 구별되었다. 그래서 ‘바오로 6세 회칙’ 이 인준되기 전까지 3회원들의 신원에 대해 말할 때 ‘평신도 수도자’ (lay Religious)로 간주되었다.

옛 회칙에서 그들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도 ‘재속 신분’ 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종래의 그리스도교적 완덕은 먼저 이 세상을 포기하는 일에 있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전도서 1.2) 그리스도를 닮는 것, 먼저 하느님에게 봉사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현세적 영위의 공허함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다. 부(富)에 대한 집착의 근원이 되는 일체 소유욕의 포기, 육욕의 단절과 완전한 정결, 자아의 말살에 의한 완전한 몰아의 경지를 성성(聖性)의 이상형으로 우러러 보고 그 이상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이며 최고의 길은 수도 생활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성덕은 그 사람이 세속에 사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수도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가에 의해 평가되었다.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신학에서 ‘세상’ 은 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성 요한은 1요한 2,15~16에서 세상을 악(惡)이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하느님을 반대하는 장소라고 하였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도하는 육체의 정욕과 현세의 쾌락과 생활의 자랑 즉 현세적인 교만을 뜻하는 것이다. 레오 13세는 1 요한 2,15~16로써 생활 규칙 2장 1~4조를 작성하였다. 이 조항들은 이전 회칙에 비해 엄격함이 줄어들었으나 절제된 생활, 엄격한 금욕과 단식을 요구하는 생활 규칙이다.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의 욕구를 철저히 절제의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은 세상 자체와 세상에서 나오는 죄악을 구별해야하고, 인간성 자체와 육신 안에 뿌리박힌 타락된 본성을 구별해야 한다. ‘바오로 6세 회칙’ 에서는 3회원들의 신원(身元)에 대해 옛 회칙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조된 것은 “재속 신분” (2조)이다.

회칙의 쇄신 과정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시와 권고에 따라” 회칙이 쇄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세상’ 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되었다. ‘세상’ 은 구원을 받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곳’ 으로 보았다. 성서에서도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만 제시된 것은 아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창조로 인해 생겨났으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보내시어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참고: 요한 3,16~17)

‘바오로 6세 회칙’ 는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신원(身元)을 명확히 ‘재속인’ 이라고 말하고 있다. 초기 프란치스코의 제자들 중에 가정을 떠나 프란치스코를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프란치스코회는 “성급히 서둘거나 떠나지들 마십시오” 하며, 그들이 ‘세상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것에서 이미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신원성은 잘 보여진다. 비록 세기를 거치면서 교회의 특권을 받기는 하였지만 ‘세상 안에서’ 사는 이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칙 쇄신의 과정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신원을 ‘재속성’ 에 두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실로 ‘바오로 6세 회칙’ 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신원을 ‘재속성’ 에 두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신원의 규정으로 재속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사도직의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

‘바오로 6세 회칙’ 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으로 ‘창립자의 정신’ 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회칙에서 이들의 신원을 ‘재속인’ 으로 규정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재속 신분’ (2조), ‘세상을’ (14조), ‘이 세상에서’ (17조), ‘세상의 표지’ (17조)라는 용어로 이들의 신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세적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며, 재물의 관리인” (11조)을 강조한다. 따라서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으려 노력”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바오로 6세 회칙’ 에서 ‘재속 신분’ 인 회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첫째,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 ‘바오로 6세 회칙’은 ‘레오 13세 회칙’과는 대조적으로 요한 3,16~17의 말씀을 참고하여, ‘바오로 6세 회칙’ 4조를 작성하였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 하느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웠다.”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불리워진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하느님께서 ‘ 좋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협조자로서 세상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인간은 세상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일에 재속 프란치스코회원들도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어느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원들이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은 세상을 ‘ 형제적이며 복음적인 것’ (회칙 4조)으로 건설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 회칙 18조에서는 1첼라노 80을 인용하면서, 프란치스코의 ‘ 세상관’ 을 보여준다. 프란치스코는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을 만났다. “ 프란치스코는 해를 쳐다볼 때, 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별과 창공을 응시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쁨에 자주 도취되곤 하였고”, 또 구더기 한 마리를 보고서도 큰 사랑을 느껴 그는 구더기를 길에서 집어 들고 행인들의 발에 밟힐까봐 안전한 곳에다 옮겨 주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구세주께 대하여 씌여진 성서의 말씀, “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입니다.” 를 상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 피조된 삼라만상에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배자이신 분께 끊임없는 영광과 찬미와 축복을 바쳤다” 회칙은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통해 회원들에게 “ ‘ 지존하신 분의 표지를 지닌’ 모든 창조물, 즉 생물과 무생물에게 존경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라고 회칙에서 권고한다.

따라서 세속에서 사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이 된다는 것은 참아내야 하는 부정적 여건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만히 살아야 할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며 또한 성취하여야 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다.

② 성화(聖化)에 불리운 이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 재속의 신분’ 으로 교회로부터 인준 받은 회칙을 서약하며, 성령의 인도로 성 프란치스코의 방식에 따라 성화에 불리워진 이들이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 재속성’ 은 회원들의 영성이다. 그들은 ‘ 재속인으로서’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현실과 현세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공헌하여야 한다.

“ 모든 신도들은 믿음의 세례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 신분과 계급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교적 완성과 사랑의 완덕을 실현하도록 불리웠다는 것” 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 재속의 신분’ 에 있는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완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교황 비오 12세(1939~1958)께서 공의회 이전에 예언적 직관력으로 내다보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재속 프란치스코회 총회에서 행하신 연설(1988. 6. 14)에서 교황 비오 12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재속의 상태에 있는 분들도 다른 완덕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천부의 완덕에 이를 수 있다” 계속해서 비오 11세께서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인용하시며 하신 말씀을 이어간다. “ 모든 사람은 자기의 처지에서 완덕을 향하고 있어서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수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즉 완덕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신다.

“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은 수도자나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완덕은 사치스러운 것도 부차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교 생활의 과잉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받은 모든 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한 응답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역대 교황들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 성화(聖化)에 불리움을 받았다’ 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법전에서도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 (303조)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화(聖化)에 불리움을 받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 복음을 생활화하면서 또 생활을 복음화하면서,(4조)
- 형제들 가운데서, 성서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적 행위 안에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면서,(5조)
- 또 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며,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6조)
- 끊임없는 회개(7조)와
- 기도와 관상 안에서(8조),
- 성모 마리아의 전적이 헌신을 본받고 열심히 신뢰하는 기도를 바치고, 성모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증거함으로써,(9조)
-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고유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10조)
- 물질적 욕구를 단순화하고, 이타의 정신으로 현세적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재물의 관리자임을 자각함으로써,(11조)
-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12조)
-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받아들이고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평등하다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함으로써,(13조)
- 그리스도교 봉사 정신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합당하게 완수함으로써,(14조)
- 정의 촉진에 솔선수범함으로써,(15조)
-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창조와 구원 성업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참여함으로써,(16조)
- 가정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평화와 충실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세상의 표지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특히 부부들은 순수하고 개방적인 크리스찬 교육으로 자녀의 성소에 주의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인간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걸음으로써,(17조)
- 생물과 무생물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남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프란치스코의 보편적 형제애 사상을 가지도록 힘씀으로써,(18조)
- 평화의 전달자로, 기쁨의 전달자로 사랑과 용서,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함으로써 또 자매인 죽음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함으로써(19조)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완덕에 이르게 된다. 회칙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성화(聖化)로 나아가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성화(聖化)의 장이 세속 생활의 영위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정이나 현세 사정에 무관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독생 성자를 파견할 만큼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현세적 일에 몰두하면서 세상 안에서 각자에게 부과된 일상 생활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그리스도와 일치로 깊어져 가며,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성화(聖化)에 이르는 길은 결코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처한 다양한 환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각 사람 앞에 펼쳐 놓으신 보화를 거두는 일이다.

3)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Chrisma)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쇄신은 “창립 당시의 정신에 계속 돌아가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바오로 6세 회칙’의 쇄신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 요구되어왔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더 프란치스코적’인 회칙이 탄생하기를 원했다.

프란치스코 카리스마를 위한 노력의 관점 하에서의 회칙의 역사를 보면, ‘우골리노 회칙’은 ‘무기 휴대와 사용의 금지’ 그리고 장엄 맹세를 금지함으로써 13세기 초 자주 발생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고, 군주에 대한 장엄 맹세는 군주에게 메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력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장엄 맹세를 금함으로써 불화와 싸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평화 운동은 바로 프란치스코의 영성 중에서 으뜸가는 것 중의 하나였다.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3회원에게 무기 휴대와 사용의 금지, 장엄 맹세는 당연한 것이다.

‘니콜라오 4세 회칙’에서 ‘프란치스코’의 이름이 회칙에 삽입됨으로써 프란치스코와 3회원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회개와 인내, 자선 활동에 대해 3회원들을 권고하고, 격려할 ‘수도자’(vir religiosus)와 ‘시찰자’(Vistator)를 프란치스코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니콜라오 4세 회칙’이 ‘우골리노 회칙’보다 더 ‘프란치스코적 회칙’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레오 13세 회칙’을 보면, “하느님”의 단어가 모두 “하느님의 계명”이라고 표현되는 곳에서만 두 번 언급된다. “하느님의 계명”은 프란치스코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된 프란치스코적 용어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 전야”에 단식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당시 교회의 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단식하였듯이 3회원들은 자신들의 사부이며 아버지요,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단식을 하였다. 또 시찰자는 프란치스코 1회 뿐만 아니라 정규 3회까지 권한이 확대되었고, 회원들의 의무 면제나 조항을 보완하는 책임까지 맡겨졌다. 이같은 옛 회칙들 안에서 프란치스코적 요소가 발견된다.

‘바오로 6세 회칙’ (1978)은 쇄신의 작업 시작부터, 즉 1966년 회칙과 회헌과 전례서의 개정을 위한 인가를 받고, “모든 관구장, 관구 대리, 지도자, 모든 3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다 프란치스코적인” 회칙을 만들려고 한다는 회칙 개정의 목적을 밝혔다. 따라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회칙 쇄신 과정이 있었고 ‘바오로 6세 회칙’은 다른 옛 회칙보다도 ‘더 프란치스코적인’ 회칙이 되었다. 수백년 간의 프란치스코 전통과 생활이 재속 프란치스코회 안에서 깊숙이 스며들어 왔다. ‘바오로 6세 회칙’은 옛 회칙들처럼 몇가지 점에서 ‘더 프란치스코적 회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바오로 6세 회칙’은 머리말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모든 부분에서 프란치스코 영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첫째, ‘바오로 6세 회칙’은 성 프란치스코가 3회원들에게 준 편지를 머리말에 넣어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바오로 6세 회칙’이 프란치스코와 초기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와의 원천적인 경험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머리말의 삽입은 초기 프란치스코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응답이었다.

둘째,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기원을 성 프란치스코에게 둔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 4가족 수도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1회를 당신의 카리스마로 창설 하였듯이, 재속 프란치스코회도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3회원들의 영성은 프란치스코회의 영성과 동일하다. 프란치스코회 영성과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창립자의 정신에서 유래된 것이기에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모든 프란치스코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칙은 이것을 분명히 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진다.”(회칙 2조) 1회와 3회는 분리되어 있으나,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수도 가족과 연대되어 있다.(회칙 26조)

셋째,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불리움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며, 실천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이들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 회칙의 정신을 요약한다면,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복음적 생활을 해야 할 때에도 “성 프란치스코 처럼”(2조) 복음적 생활을 추구하라고 말하며, 모든 것 안에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날 때,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그 분을 만날 때에도 회원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믿음”(5조)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열심한 기도를 바칠 때에도 성 프란치스코가 마리아에 대한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으로 행하며,(9조) 만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도 생물과 무생물까지 모든 만물을 형제요, 자매로 부르신 성 프란치스코의 보편적 형제애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18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더욱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충실히 생활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가족 수도회의 영적, 사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26조)

넷째, 각 개인이나 공동체의 ‘개성화’를 강조하였다. 옛 회칙들은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 회칙의 준수에 있어서도 일률 단편적인 것들로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과 문화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 회칙의 준수는 무엇보다도 정해진 양을 충실히 실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바오로 6세 회칙’은 “문자에 얽매이기보다는 성령을 따르는” 생활 양식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모든 회원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회칙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영’을 찾는데 그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바오로 6세 회칙’은 각 등급의 단위 형제회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많은 경우 새로운

적용은 ‘회헌과 특별규정’에 의해 유보함으로써 ‘바오로 6세 회칙’은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회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불리움을 받았기에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성화’의 관점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초기 프란치스코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천민이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각 신분에 차이없이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 규범”을 주었고, 또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길을 명확히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때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일치(聖化)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성 프란치스코의 언어’로, ‘성프란치스코의 생활 방식’으로 이 세상에 투신해야 한다.

4) 전례 생활과 풍요로운 사도직 활동의 조화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재속인’으로 세상 한 가운데서 회칙을 준수함으로써 ‘완덕’(성화)에서 이룬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오로 6세 회칙’은 무엇보다도 신심생활과 사도적 활동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성프란치스코의 정신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한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안토니오 성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끄지 않는 한”에 있어서 신학을 가르치는 일은 훌륭한 사도직이라고 하였다. 신심 생활과 사도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된다.

① 전례 생활

재속 회원들의 오랜 전통의 신심 생활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바오로 6세 회칙’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전례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頂點)이며,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적 활동의 목표는 전례의 참여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전례 행사 안에 항상 현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의회는 가장 먼저 미사 성체에 있어서 특히 성체의 형상 안에, 그리고 사제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사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써 성사를 주는 자 안에, 성서가 교회에서 봉독될 때에 그 말씀 안에,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찬미가를 부를 때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가르친다.

‘바오로 6세 회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성서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적 행위 안에서”(5조) 특히 “성체 성사에 참여함으로써”(8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회원들은 전례에 참여할 때, 우리 순례의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에서 거행되는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회칙은 옛 회칙들에서 언급하는 특정한 기도 생활보다는 교회의 모든 전례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도와 관상”은 사도적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회칙 8조) 하느님의 현존을 잘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회원들은 사도직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② 풍요로운 사도적 활동

평신도 사도직의 권리와 의무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그리스도에게 기원을 둔다.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견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사도직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거룩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모든 다양한 생활 환경 중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고유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10조) ‘바오로 6세 회칙’은 회원들의 사도직을 재속인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사도직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프란치스코는 어떤 특정한 사도직을 행하지 않았듯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 있어서 사도직에 대한 틀이 없다. 성령의 은총으로 하느님 창조 사업을 계속하는 모든 일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사도직이다. 이 곳에서는 사도직의 형태를 크게 3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적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형제회 내에서,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사도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가정 안에서의 사도직 - 세속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 집’ 이고 ‘ 가정’ 이다. 하느님의 축복받은 가정 없이 이 지상에 하느님 나라의 실현되지 않는다. 3회원들은 가정 생활 안에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사도직 실천 없이는 형제회의 발전도 교회의 발전도 세상 질서의 쇠신도 생각할 수 없다. ‘ 바오로 6세 회칙’ 은 가정 안에서의 사도직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고 있다.(17조)

첫째, 프란치스코의 평화와 충실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세상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회원들이 실천해야 하는 가정 첫 번째 의무이다. 옛 회칙에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 회칙에서는 이 조항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회원들을 보면, “ 가정 안에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형제들은 적당한 때에 자기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해 두어야 한다.” 고 규정 함으로써 ‘ 우골리노 회칙’ (1221)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오래된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사도직이었다.

또 부부는 서로의 위치에서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서로의 잘못과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서로에 대해 신의와 충실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생명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활하고, 그들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부는 혼인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 혼인 성사는 특별한 은총으로 혼인을 맺는 부부에게 주어진다. 부부는 가정을 성화(聖化)에로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 신자 부부(夫婦)는 자신들 상호간에 있어서나 자녀나 그 밖의 다른 식구들에게 있어서 은총의 협조자요 신앙의 증인들이다.” 라고 말한다. 사도직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실천이 바로 사도직이다. 먼저 부부의 사랑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 이웃으로 전파된다.

세 번째, 부모의 의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자녀들을 ‘ 순수하고 개방적인 크리스찬 교육’ 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한 ‘ 각 자녀의 성소’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칙은 ‘ 부모의 성소’ 가 아닌 ‘ 자녀의 성소’ 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느님은 다양한 생활 환경 중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자녀의 성소가 아닌 ‘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성소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나. 형제회 내에서의 사도직 -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단위 형제회는 “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 (22조)이다. 먼저 형제회 내에서 봉사직에 불리움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 각 회원과 공동체에 대하여 신속하고 관대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회칙 21조)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 성 프란치스코의 현존’ 을 드러내야 하는 회원들은 기도하는 사람, 평화의 사람, 그리고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위해 열정을 품은 이들이 형제회에서 봉사자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모든 회원들은 형제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봉사자들에게 협조해야 한다. 형제회에서 봉사자로서의 사도직을 받은 이들과 모든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각자 다음과 같은 일에 매진해야 한다.

- 교회의 뜻과 프란치스코의 성소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회원들의 사도적 생활에 활기를 주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 평신도로서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교회와 크리스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또 3회원들은 자신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제자임을 인식하고,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들의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 각 회원들은 각자가 ‘ 양성의 주체’ 임을 인식해야 하고, 봉사자들은 특히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과 역사 교육, ‘ 재속인’ 으로서의 고유한 영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참조 : 회칙 22, 23조)
- 회원 상호간의 영적 친교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소공동체로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조한 “ 형제애” 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임이어야 한다.(참조 : 회칙 24조)
- 각 회원들은 형제회 생활과 그밖의 사도직 활동을 위한 경비를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공동체로서의 사도적 활동을 진작하는데 도움을

준다.(참조 : 회칙 25조)

-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충실하게 진작하기 위해, 또 회칙을 더 잘 준수하기 위해, 그리고 형제회 생활에 더 큰 도움을 받기 위해 수도회 장상에게 영적 사목적 도움을 청해야 한다. 또 수도회와의 사도직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의 사도직은 보다 더 성직자,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다. 세상을 향한 사도직 - 현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평신도의 사도적 실천이 요청되고 있다. 공의회는 ‘ 사실 현대의 정세(情勢)는 오히려 보다 활발하고 보다 광범한 평신도 활동을 요청하고 있음’ 을 인정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세대는 평신도들의 고유한 은사가 수없이 꽃피워지는 “ 평신도의 시대” 라고 하였다. 오늘날 “ 평신도의 활동이 없이는 교회의 현존과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도 공의회 정신에 따라 사도직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바오로 6세 회칙’ 이전의 옛 회칙들에서는 주로 신심 생활을 강조하였고 구체적으로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적이면서 형제회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 바오로 6세 회칙’에서는 신심 생활과 함께 복음의 생활화(회칙 4조)로 세상에 투신할 것을 요청한다. “ 사회생활의 분야에서는 자신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회칙 15조) 쇄신의 과정을 거친 ‘ 바오로 6세 회칙’은 정의(회칙 15조)와 평화(회칙 19조)의 사도직을 요청하고 있다. 사도직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유래된 사도직이며 세기를 걸쳐 모든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지켜온 활동이다. 또한 현대에 새롭게 요청되는 사도직은 ‘ 창조 질서 보전’에 대한 운동이다. 이 사도직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를 뛰어 넘어 생명에 대한 존경심이다. 즉 ‘ 지존하신 분의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 즉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인 프란치스코의 영성에서 나온 사도직이다.(회칙 18조)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사도직은 ‘ 개별적’ 으로서 뿐만 아니라 ‘ 공동체’ 로서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삶의 증거와 활기에 찬 창의력으로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부여 받은 것이다.(회칙 15조)

회칙은 사도직에 관한 조항을 13~19조까지 다루면서 마지막 19조에서 사도직에 대한 결론의 형태로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요약하고 있다. 즉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사도직을 통해 “ 평화의 전달자”, “ 기쁨의 전달자”, “ 내세(來世)의 사람” 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3. ‘ 바오로 6세 회칙’ (Seraphicus Patriarcha, 1978) 본문

제1장 재속 프란치스코회

1. 성령이 교회 안에 이룩하신 많은 영적 가족들 가운데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불리운 것을 감지한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들 곧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방법과 형식은 다양하지만, 활기에 찬 상호간의 친교로 회원 모두의 세라핌적 사부이신 성인의 카리스마(Charisma)를 교회의 생활과 선교 활동에 실현하도록 지향합니다.

2.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 안에 널리 신자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가톨릭 형제회들의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입니다. 이들 형제, 자매들은 성령으로 인도되어, 각자 재속 신분으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약으로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서,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합니다.

3. 이 회칙은, “ 결의의 각서” (Memoriale Propositi, 1221)와, 니콜라오 4세 교황 성하(1289)와 레오 13세 교황 성하(1883)께서 인가한 회칙에 이어,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변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 교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회칙의 해석은 교황청이 하고, 그 적용은 회헌과 특별규정에 의하여 시행됩니다.

제2장 생활 양식

4.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의

게시자와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을 통해 도달하는 진리이며, 충만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이십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음으로써 복음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복음화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5. 그러므로,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성서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적 행위 안에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다” 고 자주 말씀하신 성 프란치스코의 믿음이 회원들이 성체 생활에 대한 영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6. 회원들은 성체 성사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에게 교회와 선교 활동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며,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영감을 받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도록 불리운 회원들은, 교황 성하와 주교들과 사제들과 전적인 친교 안에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사도적 결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하는 속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7.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들은 자기 성소 때문에, 또 복음의 강력한 힘으로 자극되어,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인 내적 변화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에 합치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쇄신 과정에서 화해의 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샘이 됩니다.

8. 예수께서 성부의 참 흠숭자이셨던 것 같이 회원들도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전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은 교회의 성사적 생활, 특히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교회가 제정한 형식에 따라 전례기도에 일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비를 재현해야 합니다.

9. 동정 마리아는 주님의 겸손한 여종이시며,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부르심에 헌연히 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흠모를 받으셨고, 그의 가족의 수호자와 변호자로 선언 되셨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성모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열심히 신뢰하는 기도를 바침으로써, 성모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10. 회원들은 성부의 수중에 당신의 의지를 위탁하신 예수님의 구원자적 순종을 본받아, 다양한 생활 환경 중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고유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 회원들은 곤란과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가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11. 성부를 신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들을 관심 있게 또 좋게 보셨지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생활을 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물질적 욕구를 단순화함으로써, 이탈의 정신으로 현세적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며, 복음에 따라, 자신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원은 “진복 8단”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순례자나 나그네”와같이, 소유욕과 지배욕 및 그러한 모든 경향에서 마음을 깨끗이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 회원들은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또 자신이 받아들인 성소 때문에도,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13. 성부께서 수많은 형제들의 맏이신 성자의 모습을 각 사람들 안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형제애의 정신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평등하다는 것을 기뻐하며, 또 그럴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구원된 피조물에 상응한 생활 조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4.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교 봉사 정신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합당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15. 회원들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들의 인간생활의 증거와 활기에 찬 창의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의 촉진에 솔선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 생활의 분야에서는 자신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16. 회원들은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창조와 구원 성업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7. 회원들은 가정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평화와 충실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쇠신된 세상의 표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인의 은혜로 생활하는 부부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 순수하고 개방적인 크리스찬 교육으로 각 자녀의 성소에 주의하면서, 기쁘게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인간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18. 이 밖에도 회원들은 “지존하신 분의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 즉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남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프란치스코의 보편적 형제애의 사상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19. 회원들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간단없이 평화를 건설해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도 신적(神的)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조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회원들은 완전한 기쁨의 전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들은 자매인 죽음의 참 뜻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同參)하게 되었으므로, 성부와 최후의 만남을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3장 형제회 생활

20.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각 단위, 지구, 국가 및 국제 등 규모에 따라 여러 등급의 형제회로 구분되며, 교회 안에서 각각 법인체로 인정받습니다. 각 등급 형제회들은 서로 일치하며, 이 회칙과 회헌의 규정에 따라 결합되어 있습니다.

21. 여러 등급의 각 형제회는 회헌에 따라, 서약한 회원이 선출한 평의회원과 회장(혹은 의장)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활기를 띄게 됩니다. 이들이 봉사는 기한부이며 각 회원과 공동체에 대하여 신속하고 관대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형제회의 내부 조직은 회헌 규정에 따라, 그들 회원과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또 각 평의회와 지도하에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22. 단위 형제회는 교회법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위 형제회는 재속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세포가 되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단위 형제회는 교회의 뜻과 프란치스코의 성소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회원들의 사도적 생활에 활기를 주기 위하여 은혜 받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23.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지원은 단위 형제회에 하며, 평의회가 새 형제들의 입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회원 입적은 예비기를 제외하고, 적어도 1년간의 양성기를 거쳐 회칙 서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적인 기간동안 전체 형제회는 그들의 생활 태도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서약을 하는 연령과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독자적 표지는 제반 규정으로 정합니다. 서약은 그 성질상 영구적인 의무입니다. 특별한 난관에 봉착한 회원들은 자기의 문제를 평의회에서 형제적인 대화로 토의할 수 있습니다. 탈회 혹은 결정적인 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헌의 규정에 따라 형제회의 평의회가 결정합니다

24. 평의회는, 회원 상호간에 영적 친교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체의 정기적인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가져야 하며, 이와 같이 다른 프란치스칸 그룹, 특히 청년 그룹과도 회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회원으로써 또는 신자로서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써야하며, 모든 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 친교는 사망한 형제들과도 그들 영혼을 위해 기도를 바쳐 줌으로써 계속됩니다.

25. 모든 형제 자매는, 형제회의 생활과 또는 전례, 사도직, 자선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지출을 고려하여 자기 능력에 따라 헌금을 해야 하며, 각 단위 형제회는 상급 형제회 평의회와 모든 경비를 분담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26. 각 계층의 평의회는 친교와 공동책임의 구체적 표시로서 회헌의 규정에 따라 영적 도움을 위한 적당하고 준비되어 있는 수도자의 지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수세기를 통해 결합되어 온 네 프란치스칸 수도가족의 장상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충실하게 진작하기 위해, 또 회칙을 더 잘 준수하기 위해, 그리고 형제회 생활에 더 큰 도움을 받기 위해, 회장(혹은 의장)은 평의회와 동의를 얻어, 소속 수도회 장상에게는 정기적인 사목 방문을 요청하고, 상급 형제회에는 형제적 방문을 회헌 규정에 따라 요청해야 합니다.